용인 흥덕 자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ARS, 모바일 청약 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 모델하우스(www.jayeon-n.co.kr)를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을 하지 않으셔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 합니다.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으며,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후 정당 당첨자에 대하여 계약체결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 ▷흥덕 신도시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전원 형사고발되어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등록취소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청 약 안 내 ▷거주지역별,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및 제한사항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 후 청약신청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임
▷최초 주택공급계약체결일 기준한 날로부터 10년동안 전매가 금지되며, 주택법시행령 제65조의2에서 정하는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공사가 우선 매입 할 수 있음
▷금회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당첨자는 앞으로 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기당첨자 본인은 물론 기당첨자의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이 되는 자, 기 당첨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 당첨자 배우자의 세대원(직계존비속에 한함)이 되는 자는 기 당첨자의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음

■ 공급위치 : 경기도 용인시 흥덕택지개발지구 Ab2블록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1층 ~ 지상 20층 9개동 50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특별공급 : 116.109㎡ 41세대, 116.608㎡ 7세대, 116.624㎡ 5세대, 116.446㎡ 12세대)

■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

(단위:㎡, 천원)

구분		아파트코드 (모델번호) 노부모 우선공급	아파트코드 (모델번호) 일반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노부모 우선공급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일반	주택형 (타입)	세대별계약면적 공급면적 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계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최고층수	층별구분	공급금액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1차 (07.05.29)	2차 (07.09.28)	3차 (08.01.29)	4차 (08.05.29)	5차 (08.10.29)	6차 (09.03.27)	잔금 (입주지정일)
국민주택	용인시	81757-01	81759-01	2006001128 (01)	2006001129 (01)	116.109 (35A)	84.82	31.289	116.109	34.439 (31.344)	150.548	59.7258	197	20	1층	289,0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28,900,000	86,700,000
															2층	295,600,000	29,560,000	29,560,000	29,560,000	29,560,000	29,560,000	29,560,000	88,680,000
	수도권	81758-01	81760-01												기준층	302,200,000	30,220,000	30,220,000	30,220,000	30,220,000	30,220,000	30,220,000	90,660,000
															최상층	309,400,000	30,940,000	30,940,000	30,940,000	30,940,000	30,940,000	30,940,000	92,820,000
	용인시	81757-02	81759-02	2006001128 (02)	2006001129 (02)	116.608 (35B)	84.86	31.748	116.608	34.455 (31.358)	151.063	59.7540	113	20	1층	290,300,000	29,030,000	29,030,000	29,030,000	29,030,000	29,030,000	29,030,000	29,030,000	87,090,000
															2층	296,900,000	29,690,000	29,690,000	29,690,000	29,690,000	29,690,000	29,690,000	89,070,000
	수도권	81758-02	81760-02												기준층	303,50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91,050,000
															최상층	311,500,000	31,150,000	31,150,000	31,150,000	31,150,000	31,150,000	31,150,000	93,450,000
	용인시	81757-03	81759-03	2006001128 (03)	2006001129 (03)	116,624 (35C)	84,85	31,774	116,624	34,452 (31,355)	151,076	59,7470	99	20	1층	290,300,000	29,030,000	29,030,000	29,030,000	29,030,000	29,030,000	29,030,000	29,030,000	87,090,000
															2층	296,900,000	29,690,000	29,690,000	29,690,000	29,690,000	29,690,000	29,690,000	89,070,000
	수도권	81758-03	81760-03												기준층	303,50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91,050,000
															최상층	309,700,000	30,970,000	30,970,000	30,970,000	30,970,000	30,970,000	30,970,000	92,910,000
	용인시	81757-04	81759-04	2006001128 (04)	2006001129 (04)	116,446 (35D)	84,85	31,596	116,446	34,452 (31,355)	150,898	59,7470	93	20	1층	289,900,000	28,990,000	28,990,000	28,990,000	28,990,000	28,990,000	28,990,000	28,990,000	86,970,000
															2층	296,500,000	29,650,000	29,650,000	29,650,000	29,650,000	29,650,000	29,650,000	88,950,000
	수도권	81758-04	81760-04												기준층	303,100,000	30,310,000	30,310,000	30,310,000	30,310,000	30,310,000	30,310,000	90,930,000
															최상층	309,700,000	30,970,000	30,970,000	30,970,000	30,970,000	30,970,000	30,970,000	92,910,000

• 상기 주택은 공급총액의 범위 내에서 주택형(타입)별,층별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음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 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한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발코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6조 규정에 의거 법률에 의해, 입사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입주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상기 주택은 주택법 제 38조의2에 의한 주택의 분양가격제한 등에 의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3조의2에 의하여 분양가격을 산정하였음 • 상기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당첨된 자(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는 당첨일로부터 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되며, 주택법 제 41조의2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주택공급계약 체결기능일로 부터 10년 동안 전매가 제한됨 • 상기 세대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됨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고임 • 세대별 계약면적중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전실, AD, PD, 벽체공유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을 말하며, 기타 공용면적은 관리실, 경로당, 경비실, 기계실 등 별도의 면적과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하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음

■ 발코니 확장비용

구 분	주택형 : 116.109㎡ (35A 타입)	주택형 : 116.608㎡ (35B 타입)	주택형 : 116.624㎡ (35C 타입)	주택형 : 116.446㎡ (35D타입)
금 액 (원)	13,229,000	8,518,000	11,478,000	10,104,000
면 적 (㎡)	27,293	20,929	23,372	24,540

※상기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우리공사에서 공급계약체결일 또는 이후에 별도 안내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또한 상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주택공급제도 변경에 따른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1.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해 확인(검증)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 그러므로 청약자께서는 청약 신청이전에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세대주 기간 등)을 확인하여, 청약신청시 주택공급신청서에 청약자격을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청약자격 기재요령
– 거주지역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시, 군 단위의 거주지역(주택건설지역) – 거주개시일 : 상기 거주지역(주택건설지역)의 전입일자를 기재(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으로 확인) – 무주택세대주 기간 : 무주택기간과 주민등록등(초본으로 확인한 세대주 인정기간을 감안하여 기재
(예 시) ① 총 세대주 인정기간6년, 무주택기간(3년) ⇒ 무주택세대주기간 : 3년 ② 총 세대주 인정기간6년, 무주택기간(9년) ⇒ 무주택세대주기간 : 6년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세대주 기간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전후 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나, 무주택기간은 연속적이어야 함.(세대주 인정기간 산정에 관한 유의사항 및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3.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적격여부를 확인하며, 청약자격이 상이하여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당첨취소, 당첨된 청약통장 재사용금지 등 불이익을 받을
4. 청약신청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 및 접수일정

(1) 특별공급 (배정세대수 : 116.109㎡형 33세대, 116.608㎡형 5세대, 116.624㎡형 2세대, 116.446㎡형 12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철거민,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로 추천한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6.12.28) 현재 무주택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인 자 • 대상자 구비서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6.12.28)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수도권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호적등본 1통(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혹은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 사본1부(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3년 이상 변동내역 표시분)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특별공급(3자녀 특별공급 포함) 신청자에 대한 상기 제 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등(초)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시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특별공급 신청서 및 배정기준표(신청서)는 당 공사 견본주택 및 각 시, 군, 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 당해 시 · 도 거주기간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임) • 대상자 신청방법 : 우선순위해당자에 의한 접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접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개시)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3자녀특별공급 신청자는 노부모부양 세대주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여 노부모부양 세대주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3자녀특별공급 신청 미달시에는 전여세대를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일반공급 : 특별공급 및 노부모부양 세대주 우선공급을 제외한 순위내 청약자에게 공급하는 세대)
• 우선 순위 배점표

배 점 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점 수	비 고
계		100			
자녀수(1)	미성년자녀	40	4자녀 이상	40	자녀(입양아 포함)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2)		10	3세대 이상	10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기간(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자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6조 제 3항의 규정에따름(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시·도 거주기간(4)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특별시 · 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 지역 전체를 당해시 · 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1),(2) :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으로 확인 (3) : 건강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3) 노부모부양 세대주 우선공급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6.12.28) 현재 용인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미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인 청약자격 1순위자
• 용인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 미만 거주자는 수도권 거주자로 간주하여 신청 가능함 • 우선공급 신청 초과시 낙첨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지역 일반 1순위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우선공급 신청 미달시 전여세대는 일반공급대상 세대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당첨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음을 확인 휘(주민등록상 확인)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함
(4) 일반공급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6.12.28) 현재 용인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자 • 용인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 미만 거주자는 수도권 거주자 지격으로 신청 가능함
(5) 공 통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2006.12.28)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이를 세대주로 간주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자격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하여 당첨자로 관리함
• 상기주택의 당첨자(특별공급, 3자녀 특별공급 포함)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청약자 본인(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1세대 2건 이상 신청시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주민등록 분리세대의 배우자도 중복신청 불가함)
• 과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제한 기간이 경과되어야만 청약이 가능함
(6)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순위	신 청 자 격	거주구분	무주택세대주기간	청약자측 납입인정금액(회차)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및 장소
3자녀 특별공급	–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합계가 85점 이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공고일 현재	–	2007.01.02	– 당 공사 견본주택 – 10:00 ~ 16:30	– 당 공사 견본주택 – 2007.01.04 (16:00)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합계가 85점 미만				2007.01.03		
특별공급	–	–	–	공고일 현재	–	2007.01.03		
노부모 우선공급	1순위	• 청약자측에 기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단, '90.4.28 이전 가입자는 12회 이상 납입한 분)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미부양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부모우선공급의 경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 소유로 봄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의 당첨사실이 포함된 사실이 없는 분	용인시/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공고일 현재	24회 이상	2007.01.05	– 인터넷 • 국민은행 청약저축 가입자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저축 가입자 www.apt2you.com – ARS • 국민은행 ☎1588-9999 • 금융결제원 ☎1369 – 모바일(국민은행에 한함) • Mbank, Kbank, BankOn – 접수시간 : 08:30 ~ 18:00	• 일시 : 2007.01.24 • 장소 : 견본주택 및 한겨레신문 게재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급	1순위	• 청약자측에 기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단, '90.4.28 이전 가입자는 12회 이상 납입한 분)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청약자측 1순위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단, 2순위로 청약 가능)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 포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분	용인시	3년이상	480만원 이상	2007.01.08			
				공고일 현재	24회 이상	2007.01.09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5년 이상	1,000만원 이상	2007.01.10		
				5년 이상	800만원 이상	2007.01.11		
				5년 이상	60회 이상	2007.01.12		
				공고일 현재	24회 이상	2007.01.15		
	2순위	• 청약자측에 기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단, '90.4.28 이전 가입자는 3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한 분) • 1순위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분	용인시/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공고일 현재	6회 이상	2007.01.16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부터 입주시 까지 무주택세대주에 한함)	용인시/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공고일 현재	–	2007.01.17	– 국민은행 : 인터넷/ARS/모바일 – 접수시간 : 08:30~18:00	

※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에 대하여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에서 청약가능하며, 대리 신청시 가족에 한하여 청구 신청가능함 (청구 접수시간 : 09:30~16:30)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본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로 확인되는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방법
• 특별공급 : 보훈대상, 장애인 및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에게 배정된 것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통보한 해당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포기에 따른 특별공급 신청 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3자녀 특별공급 : 만 20세 미만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접수일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노부모부양 세대주 우선공급 및 제 1 · 2 · 3순위 : 각 주택형별로 층별 · 동별 · 호별 구분없이 용인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 거주자 및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용인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지역 거주자를 구분하여 청약순위별로 같은 날짜에 접수하되 선순위 미달시에만 차순위를 접수함 • 각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70%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용인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 거주자에게 각각 공급하며 용인시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 세대수는 동일순위내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수도권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시에는 전여물량을 각각 거주지역별로 배분하여 차순위자에게 공급

■ 인터넷 · ARS 청약신청 서비스 안내

인터넷 · ARS 청약신청 서비스 안내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ARS(자동응답전화)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통 주택은행 포함) 청약저축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의 청약저축 가입자
이용대상	공통	• 제1 · 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제 3순위 : 국민은행 병킹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액을 유지하고 계신 분	
	인터넷 · ARS	• 청약저축 가입은행에서 인터넷 병킹 / 폰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모바일	• 국민은행에서 Mbank, Kbank, BankOn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신 분 중 [WIPI폰 기종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인터넷 청약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전화(ARS)	1588-9999 (서비스 번호 : 702)	1369(서비스 코드 : 5#)
	모바일	• SKT : MBank 접속 → KB Star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주택청약신청 • KTF, LGT : KB뱅킹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주택청약신청	

■ 세대주 인정기간 산정에 관한 유의사항
1) 세대주 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함.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한다.
2)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한다. ①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②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③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1)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 됨 2)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임
3)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4)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시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 21조의 2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사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 44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가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이때는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우선공급대상자의 경우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기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 21조의 2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지역별 공급세대수

구 분	주택형(㎡)	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3자녀가구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기타특별공급	용인시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용인시 일반공급	수도권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수도권 일반공급	계
공공분양주택	116.109	4	3	1	33	6	41	13	96	197
	116.608	1	1	–	5	3	29	8	66	113
	116.624	2	1	–	2	3	26	6	59	99
	116.446	1	1	–	10	3	22	6	50	93

■ 공급신청시 구비사항(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대상자가 창구 접수시에 한함)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및 1 · 2순위자 : 청약 저축 가입은행 비치, 3순위자 : 국민은행 비치) • 청약저축 통장(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및 1 · 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노부모부양 우선공급 및 1 · 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 • 청약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 본인확인증표(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등) ※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 구비 : 호적등본 등(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제 3자 대리 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 · 비속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사항 이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용)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신청접수 장소비치) – 대리신청자의 본인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청약자 본인의 본인확인증표 제출 생략 가능

※특별공급(3자녀 특별공급 포함) 신청자의 공급신청시 구비사항 등은 상기 "신청자격 및 접수일정"을 참조

■ 3순위자 청약신청금

구 분	전 주 택 형	신 청 금 납 부 방 법
청 약 신 청 금	200 만원	가능한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 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구접수 대상자에 한함)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2007.01.25)이후 평일 09:30 ~ 16:3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장소 : 청약 신청한 국민은행 본 · 지점 • 제 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구비서류 – 본인 또는 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접수(영수)증 (당첨자는 사본 제출), 본인확인증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청시 사용한 인장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 (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시에 한함) – 제 3자 대리환불시 : 상기 본인 환불시 구비서류 이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 청약자의 인감도장, 제 3자의 본인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청약자 본인의 본인확인증표 제출 생략 가